

# 노 후 자 동 차 교 체 감 면 신 청 서

[ ]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
[ ] 사후 폐차 또는 수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|--|--|
|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|  |             | 즉시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①성명(법인명)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②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③주소(사업장 소재지)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④연락처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노후자동차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신차(감면 신청차량)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⑤차대번호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⑩차대번호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⑥자동차등록번호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⑪자동차등록번호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⑦최초등록일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⑫최초등록일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⑬산출세액 |  | 감면 전        |              | 감면 후 |            | 감면액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별소비세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세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가가치세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|  |
| ⑨말소 등록일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⑭반출신고        |      | 사업자(하치장)번호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반출지(하치장)상호 |     |  |  |
| 첨부서류                   |  | 1. 자동차등록원부 1부 (노후자동차, 신차 각 1부)<br>2. 주민등록증(사업자등록증) 사본<br>*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|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수수료 없음     |     |  | 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(개별소비세액, 교육세액, 부가가치세액)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회사 귀하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회사 (인)

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1.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2.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3.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"Y"라고 적습니다. |  |
| 4. ⑬산출세액 중 '감면전' 란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|  |
| 5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         |  |